

이미지 퍼스트포레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 귀하의 검단신도시 이미지 퍼스트포레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아래와 같이 사전서류 접수기간을 통해 자격확인을 진행하오니, 기간 내 반드시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예비 당첨자 서류 제출 예약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을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당첨자			예비 당첨자		
서류제출 예약기간	4월 27일(화) ~ 5월 1일(토)	홈페이지 예약	서류제출 예약기간	5월 16일(일) ~ 5월 18일(화)	홈페이지 예약
서류제출 기간	5월 2일(일) ~ 5월 7일(금)	견본주택 (10:00 ~ 16:00)	서류제출 기간	5월 19일(수) ~ 5월 21일(금)	견본주택 (10:00 ~ 16:00)

■ 공통사항 및 유의사항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9)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에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 "상세"로 발급 되어야 함

※ 사전 서류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계약 시 구비서류로 같음하며,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서류	발급기준	체크사항
기본 서류 (필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주택공급신청용(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본인에 한하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가능
	신분증 사본	본인 본인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신규발급분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발급일, 주소변동사항, 전입일, 주민번호, 세대구성 사유, 배우자 확인 등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본인 견본주택 비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신고 의무,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다자녀	배점기준표*	본인 [당사 양식]견본주택 비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발급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의 등재사실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등을 포함하여 "상세"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직계비속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번호(세대원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3세대이상 구성 체크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입양의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병원직인 필) 임신의 경우(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확인서 불가)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당사 양식]견본주택 비치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 유무 확인
제3차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 및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대리인 본인 확인)
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	부적격 당점 소명각서	[당사 양식]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1년 4월 09일

평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비고
①미성년 자녀수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②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경우
	2명	10	
	1명	5	
③세대구성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④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⑤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⑥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방법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